

## 서울 마곡구역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공고(제5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지원 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

### I 금회 분양(입주) 대상용지

#### 1. 분양(입주) 대상용지 현황 및 공급방법 등

용도	면적 및 대상용지	공급방법	입찰보증금	비고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총 81,326㎡ 중 4,457㎡(4개 필지)	경쟁입찰	입찰금액의 5% 이상	필지별 개별입찰 【아래 “2. 분양(입주) 대상용지 필지목록” 및 “3.분양(입주) 대상용지 필지별 공급조건 상세사항” 참조】

#### 2. 분양(입주) 대상용지 필지목록

연번	소재지	용도	필지	면적	예정가격(원)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1	마곡동 727-1059 외 일원	지원시설용지	Ds5-1	1,224㎡	5,772,384,000	60% 이하	300% 이하	최고고도지구 (57.86m 이하)
2	마곡동 727-1059 외 일원	지원시설용지	Ds5-2	1,013㎡	4,777,308,000	60% 이하	300% 이하	최고고도지구 (57.86m 이하)
3	마곡동 727-593 외 일원	지원시설용지	Ds5-3	1,147㎡	5,409,252,000	60% 이하	300% 이하	최고고도지구 (57.86m 이하)
4	마곡동 727-498 외 일원	지원시설용지	Ds6-3	1,073㎡	5,112,845,000	60% 이하	300% 이하	최고고도지구 (57.86m 이하)

※ 각 대상용지의 입주자격, 입주절차, 지구단위계획, 공급일정 및 필지별 제한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 3. 분양(입주) 대상용지 필지별 공급조건 상세사항

□ Ds5-1,2,3

필지	용도	면적	공급단가(원/㎡)	예정가격(원)	용도지역
Ds5-1	지원시설용지 (주거복합시설)	1,224㎡	4,716,000	5,772,384,000	준공업지역
Ds5-2	지원시설용지 (주거복합시설)	1,013㎡	4,716,000	4,777,308,000	준공업지역
Ds5-3	지원시설용지 (주거복합시설)	1,147㎡	4,716,000	5,409,252,000	준공업지역

구분	지구단위계획내용		
지정용도	• 1층 가로활성화 용도(시행지침 “제1편 제3장 제8조”)		
허용용도	주거 복합 시설	DS5-1 DS5-2 DS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li> </u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건축선	• 마곡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등 참조
		형태 및 외관	• 마곡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등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유의사항	<p>주) 지원시설용지(DS3, DS4, DS10, DS13)에서 거주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50% 이상을 권장한다. 또한, 임대주택 건축시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양 전환은 불가하다.</p> <p>※ 거주용도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공동주택(기숙사임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호텔에 한함)</p> <p>주) 지원시설용지에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임대주택 건축시 300%)로 계획하여야 한다.</p> <p>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p> <p>※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 《마곡구역 오피스텔 건축물 강서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Ds6-3

필지	용도	면적	공급단가(원/㎡)	예정가격(원)	용도지역
Ds6-3	지원시설용지 (주거복합시설)	1,073㎡	4,765,000	5,112,845,000	준공업지역

구분	지구단위계획내용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 가로활성화 용도(시행지침 “제1편 제3장 제8조”)</li> </ul>		
허용용도	주거 복합 시설	DS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곡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등 참조</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곡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등 참조</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유의사항	<p>주) 지원시설용지(DS3, DS4, DS10, DS13)에서 거주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50% 이상을 권장한다. 또한, 임대주택 건축시 임대주택법 제 16조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양 전환은 불가하다.</p> <p>※ 거주용도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공동주택(기숙사·임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호텔에 한함)</p> <p>주) 지원시설용지에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임대주택 건축시 300%)로 계획하여야 한다.</p> <p>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p> <p>※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 《마곡구역 오피스텔 건축물 강서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마곡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DS1~DS17) 지구 단위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2지구	DS1~DS17		
지정용도	1층	DS1, DS2 DS5, DS6 DS8, DS9 DS11, DS12 DS14~DS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가로활성화 용도(시행지침 “제1편 제3장 제8조”)</li> </ul>
허용용도	주거 복합 시설	DS3, DS4, DS10, DS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li>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li> <li>•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 한함)</li> </ul>
	주거 복합 시설	DS5~DS7, DS11, DS12, DS14~DS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li> </ul>
	상업 복합 시설	DS8, DS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li> <li>•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li> <li>• 노유자시설(『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li> <li>•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 한함)</li> </ul>
허용용도	근린 생활 시설	DS1, D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 한함)</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서점, 공연장에 한함)</li> <li>•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 지원시설용지(DS3, DS4, DS10, DS13)에서 거주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50% 이상을 권장한다. 또한 임대주택 건축 시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양 전환 불가하다.

※ 거주용도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공동주택(기숙사임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호텔에 한함)

주) 지원시설용지에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55조 제4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임대주택 건축시 300%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

※ 건폐율, 용적률 등 상세사항은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 참조

## 마곡구역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강서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전용면적 30㎡이상 호(号) 계획

구 분	비 율	비 고
구역별(층별)배치의 경우	1 0 % 이 상	※ 구역별(층별) 배치 : 당해층 전용면적 합계의 1/2이상 되도록 배치.
분 산 배 치 의 경우	1 5 % 이 상	

입주자 공용공간 조성

구 분	조 성	비 고
주민공동시설	호(号)당 0.2㎡이상 저층부에 조성 (300호 이상 오피스텔에 적용)	※ 가급적 다른 호에 간섭이 적은 곳에 배치, 숙박시설 제외 ※ 300호 이상은 주민공동시설과 휴게공간 모두 충족
휴 게 공 간	각층에 호(号)당 0.4㎡이상으로 조성 (최소면적 10㎡ 이상으로 모든 오피스 텔에 적용)	

각층 높이계획

구 분	조 성	비 고
기 준 층	3.3m이하	※ 구조 전이부분은 PIT층으로 계획 ※ 완화 : 지상1층 공개공지 조성, 숙박시설 로비의 개방감 확보 등이 필요할 경우.
지 상 1 층	4.8m이하	

부대시설 설치

- 택배보관실, 우편물 보관함, 관리사무실, 재활용분리수거실 등 계획

※ 문의 : 강서구 건축과(02-2600-6873)

## II

## 공급일정

구분	추진일정	장소
분양(입주)공고	2015.03.25.(수)	조선일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입찰기간	2015.04.10.(금) ~ 14.(화)	온비드 ( <a href="http://www.onbid.co.kr">http://www.onbid.co.kr</a> )
개찰일시 및 장소	2015.04.15.(수) 10:00	SH공사 택지판매2팀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게시	2015.04.15.(수) 12:00	SH공사 홈페이지 등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2015.04.30(목)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입주계약 체결 기한	2015.05.13.(수)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분양계약 체결 기간	2015.05.14.(목) ~ 20.(수)	SH공사 마케팅실 택지판매2팀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http://www.i-sh.co.kr)) 및 SH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magok.i-sh.co.kr](http://magok.i-sh.co.kr))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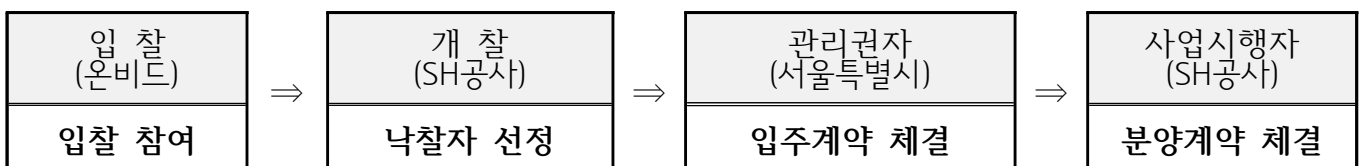
## 입주업종, 분양(입주) 신청 자격 및 절차

1. 입주업종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업종

2. 분양(입주) 신청 자격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라 함)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자

3. 분양(입주) 절차



## IV

# 입찰 참가방법

### 1.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진행절차 : 온비드(www.onbid.co.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입찰대상 물건확인 → 인터넷 입찰서 작성 →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 및 입찰서 제출방법 등은 《온비드 → 상단 왼쪽 “온비드이용안내” → 사용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 입찰신청 희망자가 전산장비 등의 부족으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의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 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마.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시간 전에 공동신청자 대표자선임계(SH공사 소정양식, 서식6, 홈페이지 게시)를 SH공사 택지 판매2팀 지원시설용지 담당자에게 제출(공동입찰참가서 및 위임장 양식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온비드”를 통해 제출한 입찰서에 공동입찰 체크 후 공동입찰자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바. 입찰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물건, 입찰 금액 등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입찰 및 1인이 2필지 이상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아.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신청유의사항 및 “온비드”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에서 제시된 안내 자료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2.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은행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 선택하여 납부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시 전자보증서로는 불가하며, 입찰보증금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은행창구입금 등 일반적인 은행 거래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별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과 거래방법별 이체한도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시 납부할 입찰보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에 입금하여야 하고,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증금 입금상태는 《온비드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입찰보증금의 이체, 반환 및 귀속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SH공사 입찰보증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나. 온비드의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및 은행대사 작업등에 장애가 있어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 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다. 낙찰자가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경우, 기한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입주·분양계약 미체결 등의 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은 SH공사에 귀속됩니다.

### 4. 입찰의 무효, 연기 또는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② 입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필지에 2번 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입찰서 물건표시, 입찰보증금, 주소, 성명, 날인 등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기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 ⑤ 기타 공고 및 유의서의 내용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

나.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및 SH공사의 사정에 따라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 게재(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등)에 의합니다.



## V

### 낙찰자 결정방법

1. 필지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 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개찰결과는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2015.04.15.)되며, 별도의 서면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VI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입주계약 체결

1.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기한(2015.04.30) 및 입주계약 체결기한(2015.05.13.) 내 반드시 사업계획서 제출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셔야 분양계약이 가능합니다.

전 화 : 02-2133-1517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홈페이지 : <http://citybuild.seoul.go.kr/magok>

2.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 구비서류 제출)

구 분	구비서류	참고서식	비 고
사업계획서 제출	용지매입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계획서는 서식 5의 양식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업종 및 건축물 허용용도는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서식 5	
	서약서 1부	서식 2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신청서 1부	서식 4	
	(법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서식 3	사용인감 사용시
	개인 :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1통(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참고서식은 붙임 1 참조.

## VII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 납부 및 기타 계약관련 사항

### 1. 분양계약 체결 및 구비서류

- 가. 낙찰자는 분양광고 상의 공급일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공동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 분양계약 체결 장소 : SH공사 마케팅실 택지판매2팀(02-3410-7377)
- 라.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 구비서류** 제출)

구분	구비서류
공통	계약금 납부영수증 또는 입금확인 서류(무통장입금증 등) 1부
	입주계약서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개인	주민등록초본 1통
	개인정보이용동의서(공사 소정양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1통(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 2.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일정

- 가. 분양대금은 원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나. 분양대금은 계약금(20%)을 계약체결 전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체결 후 아래의 납부비율에 따른 금액만큼 주어진 납기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양대금의 60%를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대금 납부비율	20%	20%	60%
납부기한	계약체결시 (2015.05.20.)	2015.09.30	2016.04.29

- 다. 대금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기일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라.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1일 전까지 선납하는 경우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나, 토지사용승낙 시에는 사용승낙일부터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납할인을 받은 후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사용승낙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할인금액을 SH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선납할인율은 선납시점의 은행 시중 금리 등 제반사항 고려하여 결정함)

### 3. 연체료율, 변제충당 순서

가. 분양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 이율을 일할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합니다.

나.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

다. 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위약금, 변상금, 연체료, 분양대금 순에 의합니다.

### 4. 면적기준 및 정산

: 공급면적은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부지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부리하지 않습니다.

### 5. 지정용도의 사용 및 개발기한의 의무

가. 매수인은 “분양공고”된 사항을 수인하고 “목적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인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 공사 착공을 하여 5년 이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사 착공은 착공신고 시점을, 완공 시점은 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 사용승인일을 말함)

### 6. 목적용지 사용승낙

가.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가능하며,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사용승낙 이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등침하 및 단지계획고 정리 등은 매수인이 실시하여야 하고,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토지사용승낙 이후 매수인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훼손되거나 분양된 토지 내의 문제 발생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7. 수인의무

: 매수인은 목적토지 상의 지원시설용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내용 포함), 건축 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분양대금의 감액이나 지급기일 연기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책임을 SH공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 8. 매수인의 명의변경

가. 금회 공급되는 토지는 지원시설용지이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제3자에게 명의변경(전매,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법률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9. 소유권이전등기

: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10. 기한의 이익 상실

: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신청되었거나 매수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된 경우 SH공사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미납잔금 전액을 대금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1. 등기비용의 부담

: 분양계약의 체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12. 통지

: 매수인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매수인의 대표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SH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3.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에 따릅니다.

## 14.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한 사항

가. 취득세 관련사항 :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날(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재산세 관련사항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정팀-432('08.1.29)】
- 다. 분양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라. 세금납부에 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 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 VIII 유의사항

### 1. 일반 유의사항

- 공급대상용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산업단지로 입주자격 등에 대하여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02-2133-1517)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건물외의 용도로 입주(분양)계약 신청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분양(입주)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은 SH공사에 귀속됩니다.
- SH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매수인에 대하여 일체의 채무보증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계약자 및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자 및 매수인은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된 경우 수시로 서울특별시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의 ‘공고및 공지’ 및 SH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magok.i-sh.co.kr)의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2.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 【개발계획 관련】

- 매각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획 변경 및 이로 인한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서울시 및 SH공사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곡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토지 사용 시점에 중앙공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 매수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관련도서 및 상세도는 SH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magok.i-sh.co.kr) 및 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02-3410-7558, 7560)에서 열람 가능함.
- 3지구 내 빗물펌프장 신설 및 기존 마곡빗물펌프장 개축,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등 간선하수도 공사가 토지 사용 시점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의 합류식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토지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며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마곡구역 북측 서남물 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토지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며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환기구 등 지상구조물 포함) 등 대상부지 인근 시설물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토지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마곡구역 내 지하철 구조물 인접한 용지의 개발 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주)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출입구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출입구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사용 시기를 포함한 5호선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곡구역 내 코레일공항철도 마곡역(가칭) 역사 개통시기 포함 해당철도 관련 문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 마곡구역 내 모든 필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사유로 추후 필지번호 및 면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Ds5블록 및 Ds6블록은 인근 연결녹지 하부에 지하철 5호선이 통과하며, 이로 인한 진동, 소음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전 SH공사 택지판매2팀(02-3410-7377), 택지계획팀(02-3410-7558,7560), 한국전력공사 등과 관련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 관련】**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규제사항(영향평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측량은 매수인이 SH공사를 경유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소관 공급기관(한국전력공사, KT, 집단에너지사업단,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별로 별도 협의해야 하며, 연결 방법은 사전에 SH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SH공사 감독자의 입회하에 연결 시공하여야 합니다.
- 우기 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원지반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원지반 이하가 토양오염 시 토양정화처리 조치)은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인이 토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사용 시 인접 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상·하수관로, 도로포장 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훼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은 해당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 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협의 내용(재협의 내용 포함)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공급대상 토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 계획(용적률, 면적, 필지계획선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용지는 현재 현장사무실이나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 중이나, 용지 매각 후 토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단지조성공사 준공 전까지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SH공사가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SH공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차수공법(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침하 방지), Earth Anchor(인근 기반시설 훼손 우려)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변위가 허용되어 도로침하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가시설공법은 시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SH공사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마곡구역 내 공동구 설치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계획변경에 따라 공동구 설치일정 및 기반시설 설치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는 마곡구역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
- 매각된 토지는 부지 성토 등을 실시하거나 원지반 상태로 공급하며,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절토 및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진출입로 및 운행시간, 환경대책을 SH공사 단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마곡구역 내 전력공급은 마곡구역 내 건설예정인 마곡변전소 완공 이후에 가능하므로, 자세한 전력공급시기에 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공사용 전력은 한국전력공사 및 SH공사와 별도 협의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현장여건 관련】

- 마곡구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지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 완료 시기는 2016년 상반기 예정으로 이는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 마곡구역 내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공급용지 중 지하철이 통과(지하철역사 포함)하는 용지 및 인접된 용지는 용지 사용 시 이로 인한 일부 제한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에 지하철 관련 기관에 이를 확인한 후 분양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저촉 구분지상권(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설정 등을 인정하여야 하며 SH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또한, 철도안전법에 의거 부지공사 착공 전에 철도관리 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마곡구역 내 돌출되어 설치될 시설물(지하철 환기구,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정압기, 신호등 변압기 등)의 최종 위치가 개발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지조성공사 현장 감리단에 위 시설물의 최종 위치 확인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위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매수한 토지로의 주변 진입도로는 미포장상태로 공급 될 수 있으며, 해당토지 공사장 임시진출입로는 단지조성공사 현장 책임감리원(1공구 : 02-2668-0565, 2공구 : 02-3661-1613)과 사전협의 완료 후 개설하되 그 비용은 분양계약자부담으로 하며, 매수한 토지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으로 진입도로 훼손 시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착공 관련】

-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SH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magok.i-sh.co.kr) 내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서 “마곡지구 영향평가서 및 가이드라인 자료 게재”를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라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 문의 : 건축물 가이드라인(3410-7589), 가로경관 가이드라인(3410-7558,7560)
- 마곡구역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구성한 마곡자문기구【마곡조성자문단, 총괄건축가(MA)】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1만㎡ 이상의 필지는 단지·건축 세부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과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각각 자문을 받아야 하며, 1만㎡ 미만의 필지는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건축계획에 대하여 총괄건축가(MA)의 수시 협의 및 자문할 수 있습니다.

※ 마곡지구 건축계획 자문 매뉴얼 참조

- 사업추진 시 단지 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해당 조례에서 대상규모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건축 가능한 대상용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마곡구역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입찰참가 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강서구 건축과(02-2600-6873)

#### 【에너지 사용관련】

- 본 사업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입니다.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SH공사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기계팀(02-3410-7601)에 문의바랍니다.
-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에너지 사용계획 변경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IX

## 문의처

### 1. 전자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전 화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입주계약 관련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마곡사업추진단 마곡사업과 사업기획팀
- 전 화 : 02-2133-1517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 홈페이지 : <http://citybuild.seoul.go.kr/magok>

### 3. 분양계약 관련

- 담당부서 : SH공사 마케팅실 택지판매2팀
- 전 화 : 02-3410-7377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공사 6층
- 홈페이지 : <http://magok.i-sh.co.kr>

**4.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등) 관련**

- 담당부서 : SH공사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택지계획팀
- 전 화 : 02-3410-7558~7560

**5. 기반시설 등 토지조성 관련**

- 담당부서 : SH공사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토목조경팀
- 전 화 : 02-3410-7578

**6. 에너지 사용계획 관련**

- 담당부서 : SH공사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기계팀
- 전 화 : 02-3410-7601

**7. 건축물 가이드라인 관련**

- 담당부서 : SH공사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건축사업팀
- 전 화 : 02-3410-7589

- 붙임 1. 마곡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 서식(1~7)**
2.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53호, 2014.12.26.)
  3.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4.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 2013.09.05)

2015.03.25.

에스에이치공사